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자 : 이천시청

2. 제출일자 : 2002.4.19

3. 근거규정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1,3,5,6,7,9항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4. 검토내용

- 본 개정안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지역) 제1항은 주차장법 제19조 1항이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준농림지역의 범위지정권한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범위를 이천시 관할 구역내 모든 준농림지역으로 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동조 제2항은 준농림지역 안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할 대상시설물을 규정한 것으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과 별표 1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을 위탁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골프장·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광장, 기타건축물로 규정하고 그 종류를 세분할 경우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동령의 설치대상보다 오히려 설치대상의 종류를 단순화함으로 인하여 상위법과의 관계에 있어 검토를 요함
- 제17조 제1항은 법 제19조제9항에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과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감액의 근거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주차장법

제5장 부설주차장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거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 1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5. 12. 29>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8>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⑧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승계한다.<신설 2000.1.28>

⑨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상정기준 및 감액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0.1.28>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도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고자 하는

(제53회 -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관련)(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 <개정 1999.6.3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육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육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육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